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('22.7.21)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·지구 확대(안 제8조의4)

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특례가 허용되는 지역·지구로 포함.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4 중 “공급촉진지구를”을 “공급촉진지구와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(다만,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의4(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) 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·지구”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<u>공급촉진지구</u>를 말한다.</p>	<p>제8조의4(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급촉진지구와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(다만,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을</u> 말한다.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663